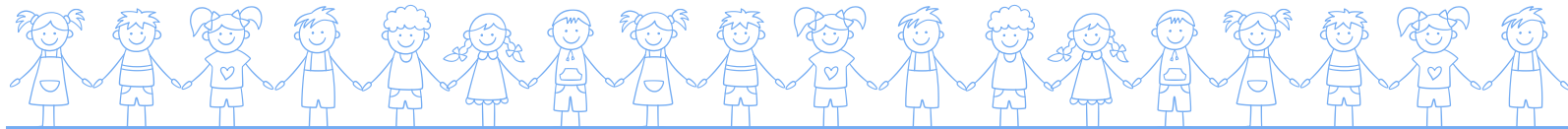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Contents



- 1장 아동인권
- 2장 아동학대 이해
- 3장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 4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사례개입과정
- 5장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아동학대예방교육
- 6장 Q & A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1

아동인권



UN아동권리협약

1989. 11. 20.
UN총회 만장일치 채택



1991. 9. 2.
대한민국 협약 국제법 공포



- 아동이 권리의 주체인 '인간'으로서 인식되기 시작
- 대부분 나라에서 비준
-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발휘(1991.11. 공식 협약 가입)

4가지 아동권리



생존권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

모든 종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여권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일들에 참여할 권리

아동권리헌장 이해



아동권리헌장이란?

- 2016년 5월 2일 보건복지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아동권리헌장> 제정
- 전문과 9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아동권리헌장은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고 어른도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약속을 의미



아동권리헌장 주요 내용

-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
-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 존중받을 권리
-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개인적인 생활이 보호받을 권리
-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
-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징계권 폐지 시행

징계권

폐지

민법 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사유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체벌금지에 대한 해외 동향



해외 주요국가 규정

구분	내용
스웨덴	‘66년 징계규정 삭제 → ‘79년 체벌금지 명문화
오스트리아	‘77년 징계규정 삭제 → ‘89년 체벌금지 명문화
독일	‘57년 징계규정 삭제 → ‘97년 학대금지 명문화 → ‘00년 체벌금지 명문화



「UN 아동권리협약」 제19조 (폭력과 학대)

우리는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쓰거나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아동학대 이해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만 18세미만인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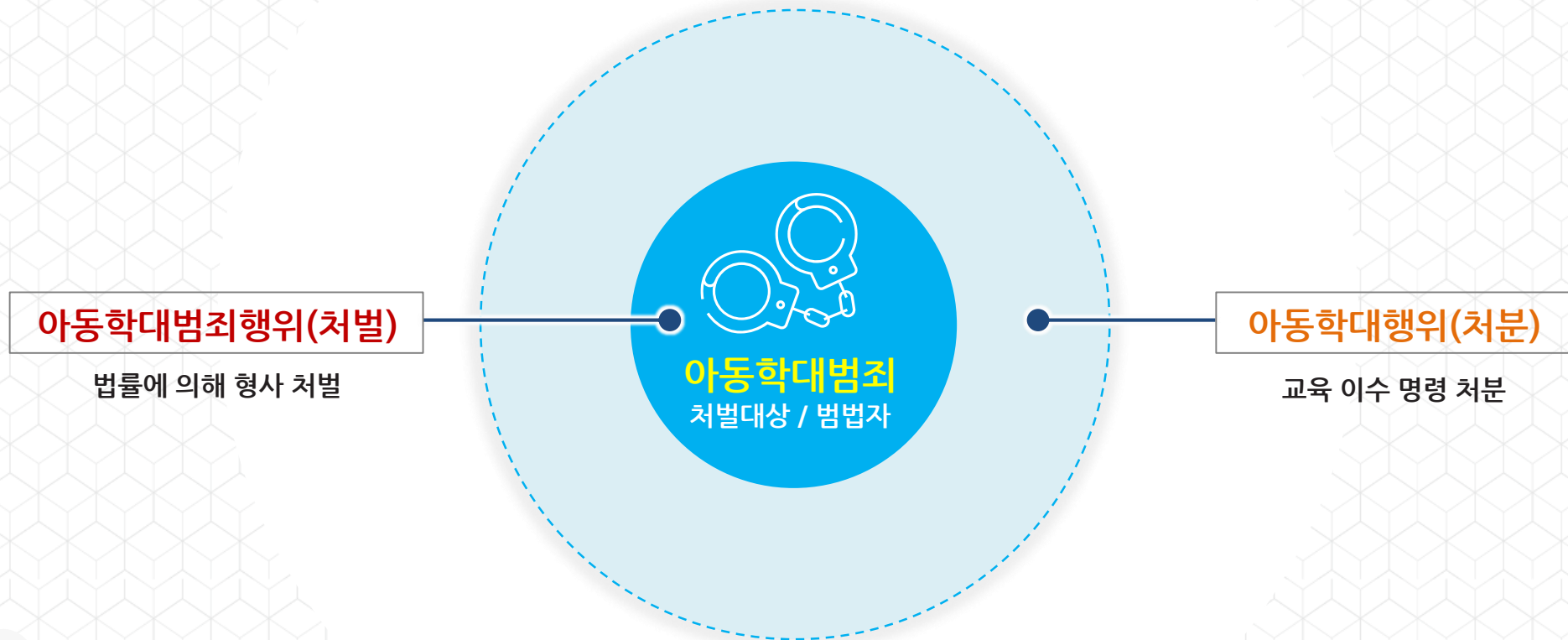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의미하므로 아동학대범죄를 직접 범한 자뿐만 아니라 그를 교사, 방조한 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

아동학대 행위는 모두 처벌(범법자)받는 것인가?



정도나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는
처벌 대상 또는 **처분(상담/교육) 대상**이 될 수도 있음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행위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행위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예

- 손, 발로 때리고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 조르고 비트는 행위
- 할퀴는 행위
- 도구나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등

의심 징후

신체적 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손바닥, 발바닥, 엉덩이 등에 담뱃불 자국, 양말 모양, 장갑 모양, 도넛 모양의 상처
- 뜨거운 물에 잠겨서 생긴 화상 자국
- 팔, 다리, 목 등에 묶은 줄 자국의 화상
- 겨드랑이나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처럼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신체학대



‘신체학대’ 처벌 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아동학대 행위 중 일부 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례

// 지갑에서 지폐를 훔친 10살 아동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파리채로 아이의 허벅지와 팔 등을 약 10회 때린 아이의 아버지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발방지 프로그램 수강 명령



익숙한 도구를 사용한 체벌도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함



정서학대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

예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의심 징후

신체적 징후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수면장애, 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행동적 징후

- 극단행동, 과잉행동
- 발달지연
- 자살시도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정서학대



‘정서학대’ 처벌 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아동학대 행위 중 일부 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례

// 아동이 휴대폰을 여러 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잃어버렸다가 찾은 휴대전화를 아동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깨뜨린 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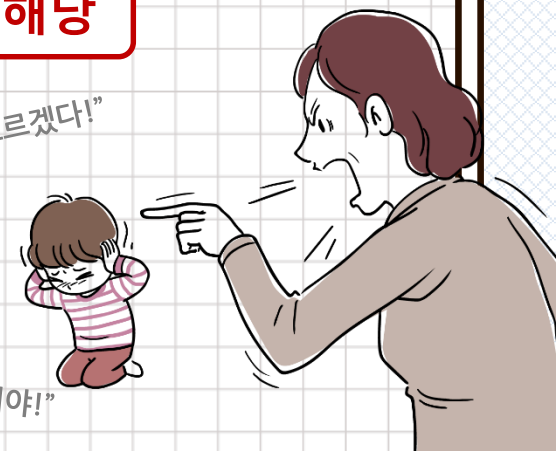
“너 나중에 집에 가서 보자!”

“넌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부모들이 습관처럼 뱉는 말들도 아동에게는 큰 상처가 되며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계속 그러면 무서운 아저씨가 잡아갈 거야!”

“한 번만 더 반찬 투정하면 밥 안 줄거야!”



성학대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예

-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 행위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이라는 목적이 없어도 성학대로 인정될 수 있음

의심 징후

신체적 징후

-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 임신
- 생식기의 증거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 질의 홍진(紅疹)
- 배뇨곤란
- 요도염
- 생식기의 대상포진
- 항문 괄약근의 손상
-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 항문이 좁아짐
-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 변비
- 대변에 혈액이 나옴
- 구강증후
- 입천장의 손상
- 인두(咽讀)임질(gonorrhea)

행동적 징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 비행, 가출
- 약물 및 알코올 남용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 범죄행위
-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유뇨증/유분증
-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 야뇨증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저조한 학업수행

성학대



‘성학대’ 처벌 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사례

// 4세 아동에게 집 거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한 아이의 아버지 //



아동복지법 위반 외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하여
징역4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방임



방임이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예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
- 불결한 환경에 아동 방치
-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교육적 방임

- 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것
-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의무에 대한 방치행위
-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등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의심 징후

신체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행동적 징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 수업 중 조는 태도
- 잦은 결석



방임



‘방임’ 처벌 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아동복지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합의이혼을 위한 숙려기간 중에
자녀인 A(만 1세), B(생후 8개월)를 배우자의 집 앞 복도에 두고 떠난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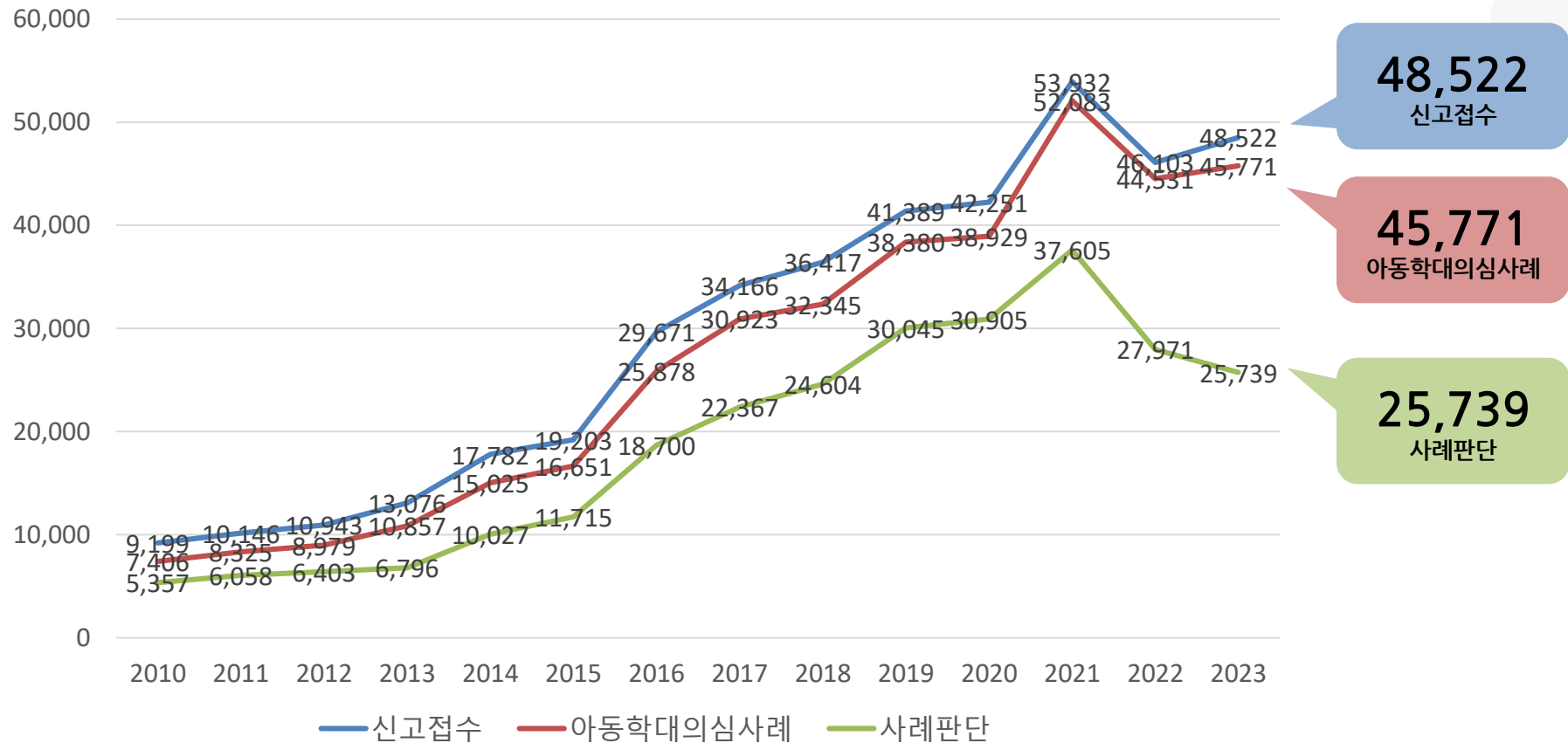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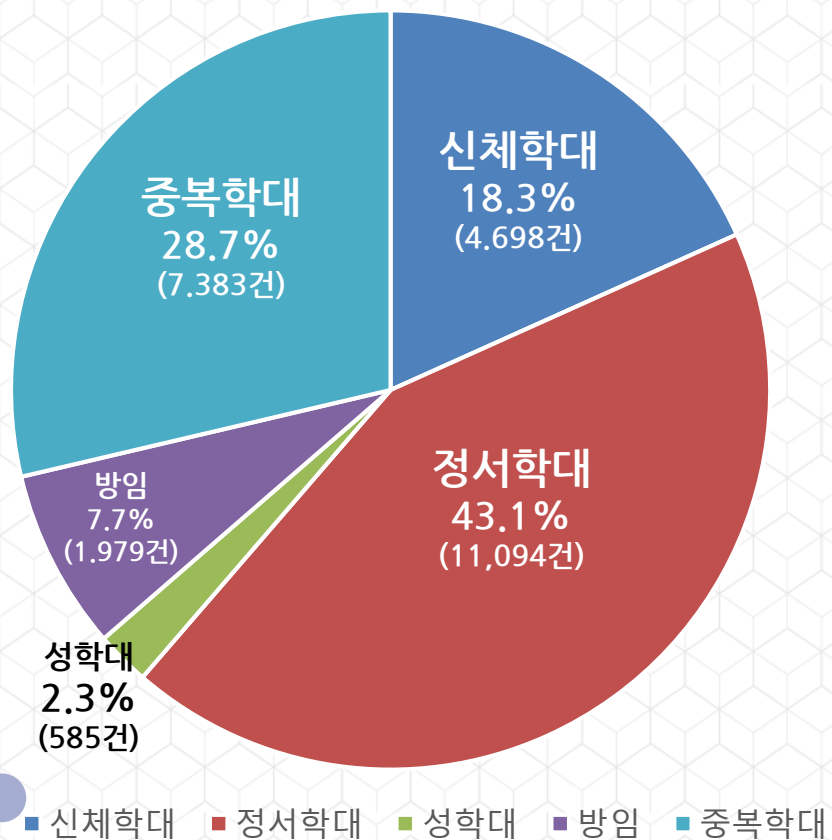
2. 아동학대 이해

연도별 신고접수 및 사례판단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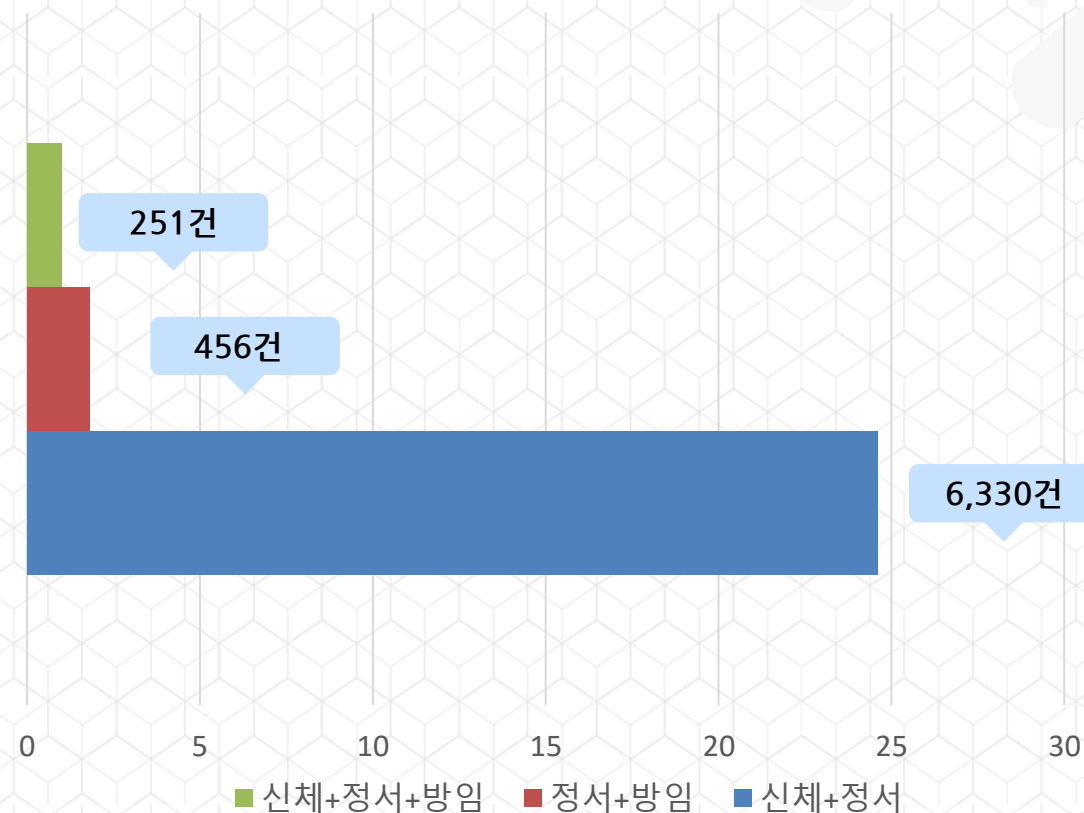


2. 아동학대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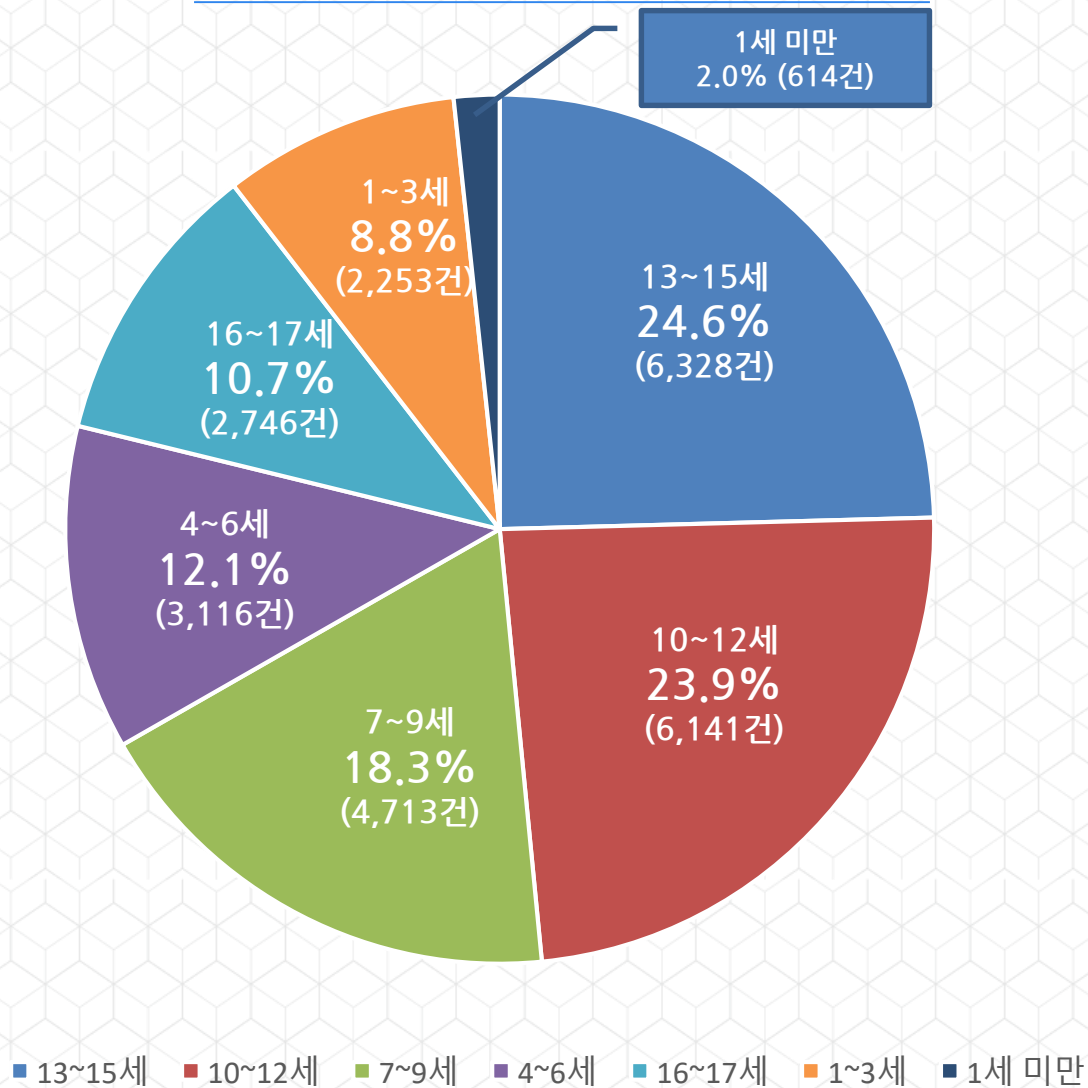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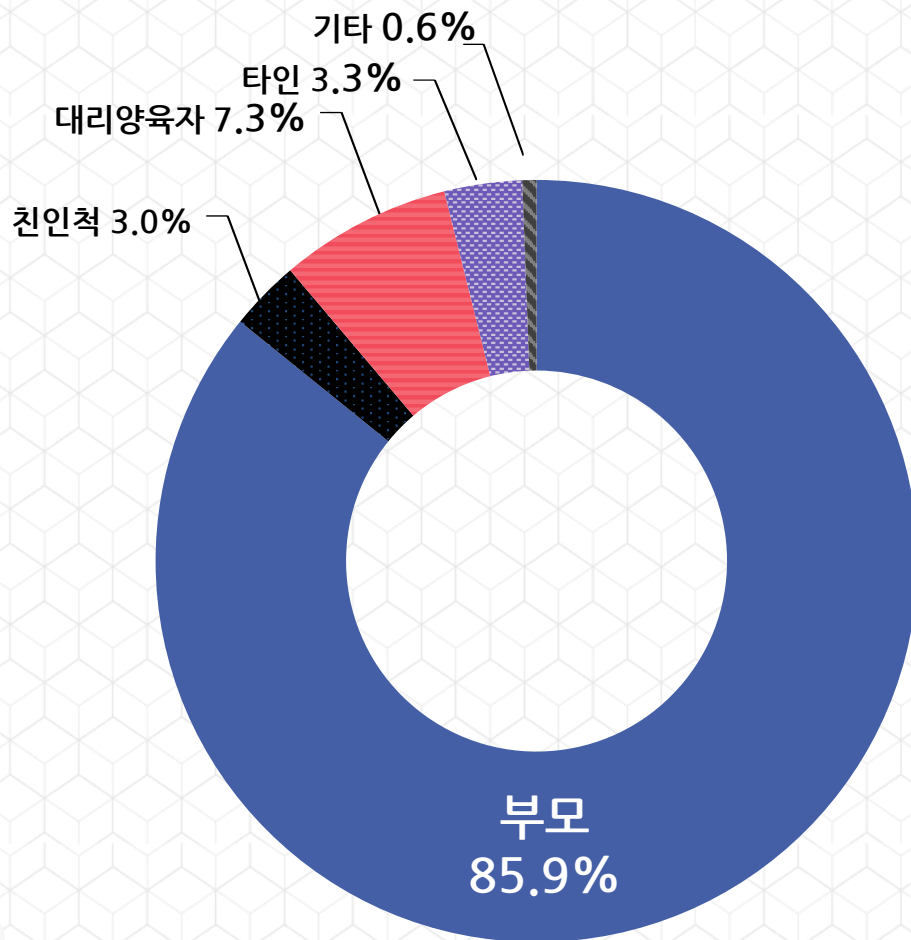
중복학대



피해아동 연령 현황



아동학대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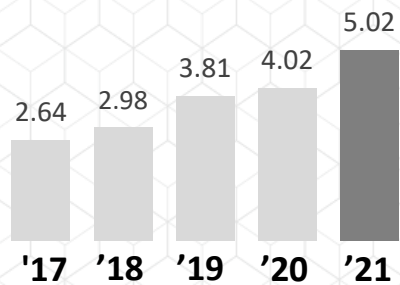


관계		건수(비율 %)	
부모	친부	12,414	48.2
	친모	8,921	34.7
	계부	511	2.0
	계모	220	0.9
	양부	24	0.1
	양모	16	0.1
대리양육자	부, 모의 동거인	190	0.7
	유치원 교직원	59	0.2
	초·중·고교 직원	793	3.1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259	1.0
	보육교직원	356	1.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29	0.5
	기타시설 종사자	50	0.2
	합계	23,942	93.1

아동학대 사건의 절대다수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
부모 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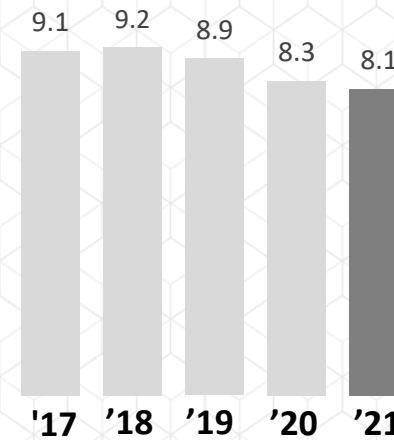
아동학대 발견율(%) 비교

국내 아동학대 발견율(%)



<국내>

미국 아동학대 발견율(%)



<미국>

(해외 아동학대 인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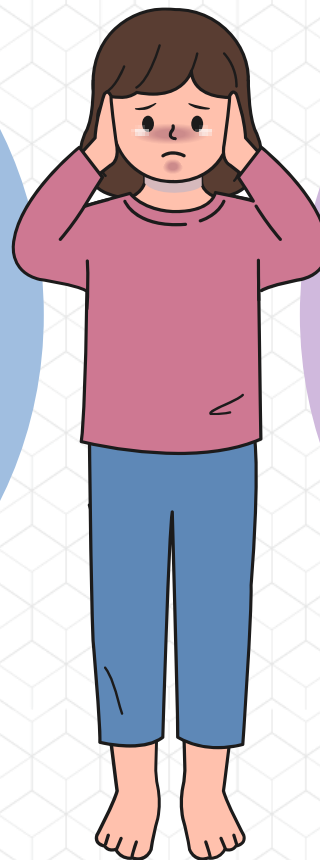
- 아이가 몇일간 같은 옷을 입고 다닐 경우 이웃, 학교선생님, 친구 부모가 모두 신고
- 아이 혼자 택배를 받으러 나오면 부모님은 어디에 있냐고 묻는 택배아저씨
- 집안에서 부모가 고성을 지르며 다룰 시 아이에 대한 정서학대로 이웃주민이 신고

아동학대 후유증



신체적 손상

피부결손 및 자상
신체 일부의 변형 및 절단, 화상
골절, 안구출혈, 장기파열, 두뇌손상,
성장실패, 생리기능 변화, 사망



심리·정서적 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지능·자아기능 손상,
감정조절기능 저하 및 이상,
자기개념 손상(무력감), 애착형성 붕괴,
충동조절능력 저하, 또래관계 붕괴,
자학적·자기파괴 행동, 정신병리

3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아동학대 발견하기

신체학대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분의 상처, 할퀴거나
손으로 맞은 것 같은 자국



체벌 도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



대부분 화상 자국은
아동학대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함
(뜨거운 물, 다리미 자국 등)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아동학대 발견하기

정서학대

- 귀가 거부, 우울, 좋지못한 언행 사용 등
- 폭언, 모욕, 감금, 심각한 비교 등을 하는 경우 모두 해당

➡ 발견이 어려워 아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함

방임

- 위생상태 불량,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영양실조
- 몸에 멍, 타박상, 빈대 등이 있는 경우
- 학교나 병원을 보내지 않는 경우

➡ 아동의 위생상태나 의복, 냄새 등으로 **확인**이 가능함



아동학대 발견하기

성학대

- 연령대에 맞지 않는 성지식과 행동(성놀이)을 보임
-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책 행동을 보임
- 섭식장애
- 평소와 다른 행동, 좋아하던 것에 관심이 없음
- 어른에 대한 갑작스런 거부
- 악몽 등 수면장애

대처 요령

- ✓ 아동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상담하지 말고 바로 **112** 신고
- ✓ 발견 상태 유지를 위해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씻기지 않기
- ✓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말해주기
- ✓ 캐묻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것 처럼 대하기



아동학대 발견하기

신체적 징후 및 행동적 징후

신체학대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 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자국
- 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 입(술)/잇몸/눈/외음부 상처, 긁히거나 물린 상처
- 손목/발목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긁힌 상처
-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 겨드랑이/팔뚝 안쪽/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대뇌 출혈/망막출혈/양쪽 안구 손상/머리카락이 뜯겨 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걸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골절, 골막하출혈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 간혈종/간열상/십이지장 천공/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 폐 좌상/기흉/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성학대

[성적 행동지표]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상호관계

[신체적 지표]

-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 임신

[생식기의 증거]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질의 홍진
- 배뇨곤란
- 요도염, 생식기의 대상포진

[항문증후]

- 항문 괄약근의 손상, 항문주변의 멍/찰과상
-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항문이 좁아짐
-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 변비, 대변에 혈액이 나옴

[구강증후]

- 입천장의 손상, 인두 임질(pharyngeal gonorrhea)

정서학대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저하

방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아동학대 신고 절차

학대 의심징후
(상흔, 증언 등) 발견

응급상황 시
아동 안전 확보

아동학대 신고
112

아동학대 조사
사례개입 협조

사후지원
서비스 협조

아동학대 신고해야하는 경우

-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아동학대 신고 방법

국번없이
112

신고 시 알릴 정보

피해아동의 현재 상황

- 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

피해아동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아동학대행위자 관련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등

신고자 관련사항

-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 주소, 아동과의
관계, 신고목적 등

아동학대 발생여부

- 아동학대 유형(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
•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 아동학대 발생빈도
• 아동학대의 지속성
•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 등

기타 사항

- 추가 아동 존재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여부)
• 학대행위의심자 현재 상황(심신상태 등)
• 타기관과의 연계여부 등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시 주의사항



◆ 아동학대 최초 인지 시 즉시 신고

- 신고 자체 시 아동의 위험 증가, 증거 멸실,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응급상황 시 아동의 안전 및 보호

- 아동학대행위자에 의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오기 전까지 학교 차원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

◆ 학대(의심)행위자에게 신고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기

-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일 수도 있으므로 신고내용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행위 증거가 조작 또는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

◆ 가능한 한 증거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몸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음

◆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 출동하도록 요청

- 당장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수사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동반 출동 요청

◆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아동을 대함

- 피해학생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도록 노력

◆ 현장조사 전에 피해학생에게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

- 피해학생이 계속된 질문으로 기억에 혼동이 생길 수 있음

◆ 신고 후에도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적극 협조

- 피해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직장, 이해관계자 등과 정보 공유를 최소화하도록 함

4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사례개입 과정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기관별 역할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화

아동복지법 개정(2020.10.1. 시행)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동사항 발생

→ 시·군·구 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아동학대 조사, 조치 전달),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기능 강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제22조제 6항)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도/시·군·구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 제22조의4)

시도/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래의 업무를 실시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 아동학대 관련 업무
- 피해아동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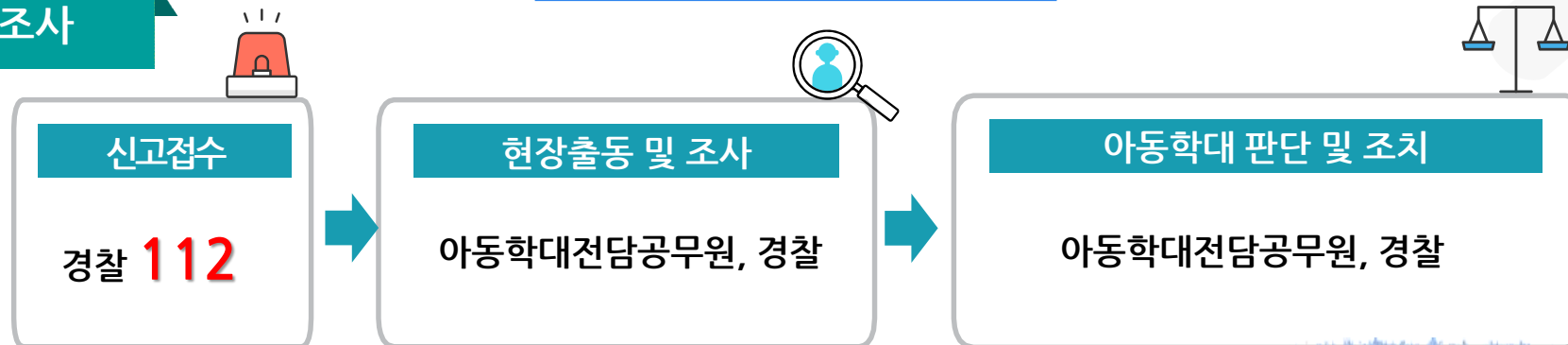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제46조제2항)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illegible]

아동학대 사례 개입과정

아동학대조사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및 계획 수립 (아동보호전문기관)

- 피해아동: 원가정보보호, 응급조치
- 아동학대행위자: 행위제지(가정),
임시조치(고소고발)

심리치료지원

- 대상: 아동, 부모
- 비용: 무료

심리검사

- 종류: 간이검사, 종합심리평가 등

심리치료

- 종류: 미술, 놀이 등
- 기간: 평균 2~6개월
- 장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치료실 등

상담 및 교육

- 부모: 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모교육 등
- 아동: 개별상담,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 임시조치, 보호처분 후 법원에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수감명령 이행

사례종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의하여 사례 종결

타기관연계

- 건강가정지원센터
- 의료기관
- 법률구조공단
- 심리상담센터
- 사회복지기관
- 기타관련기관 등

아동학대 사례 개입과정

신고접수 및 아동학대조사

1



신고접수

- 24시간 신고전화 운영(112)
- 아동학대의심사례 접수 후 아동학대 조사 실시
-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동행출동
- 일반상담 접수 및 타기관 연계

학대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아동의 현 거주지, 행위자와의 관계 등)를 알려주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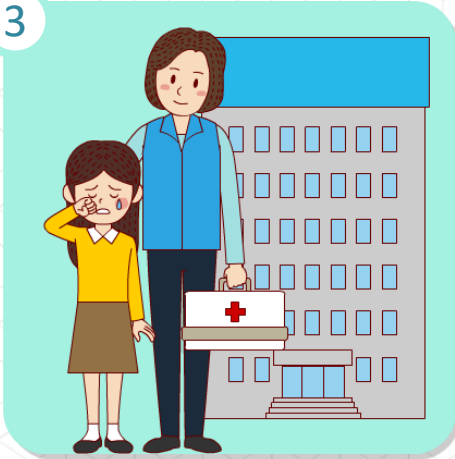
조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출동
- 경찰 우선 / 동행출동
- 학대 발생지 및 관련 장소 내 조사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필수 조사, 신고자,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목격자, 이웃 등
관련인 조사
- 아동학대혐의 판단

아동학대 사례 개입과정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조치

3



피해아동 보호조치

- 피해아동 응급조치: 행위자 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격리, 보호시설로 인도, 의료기관으로 인도
- 피해아동 보호명령: 행위자를 퇴거 등 격리, 접근제한, 전기통신 제한, 행위자 친권정지, 아동보호위탁, 아동치료위탁, 아동가정위탁, 후견인 권한 제한 및 정지, 보조인 및 후견인 선임

4



학대행위자 조치

- 임시조치: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행사 제한 및 정지,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 위탁, 구치
- 고소고발

아동학대 사례 개입과정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5



사례관리

- 피해 아동: 상담, 의료지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수사 및 증거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 학대행위자: 보호처분,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의료지원,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등
- 가족: 상담, 가족치료,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원가정복구를 위한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등

6



사후관리

- 사후관리 연계기관 결정
- 사후관리 서비스제공모니터링

※ 아동보호전문기관 :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감소,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복 지원
(안전 점검, 상담교육,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 안전모니터링, 의료적 자원 연계, 가정복귀 프로그램 실시 등)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를 부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아동복지법 제26조2 제1항)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직무자에게**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기본지식 함양 독려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2)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등은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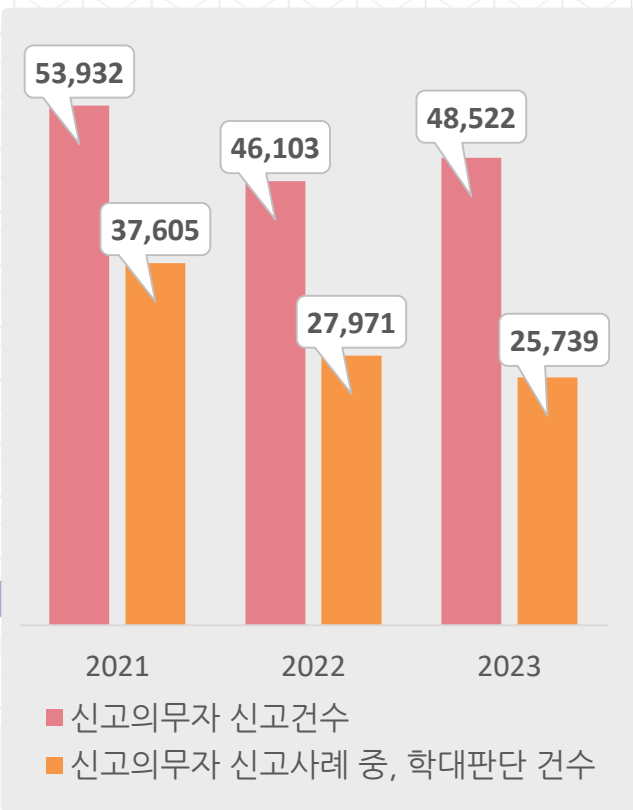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6개 직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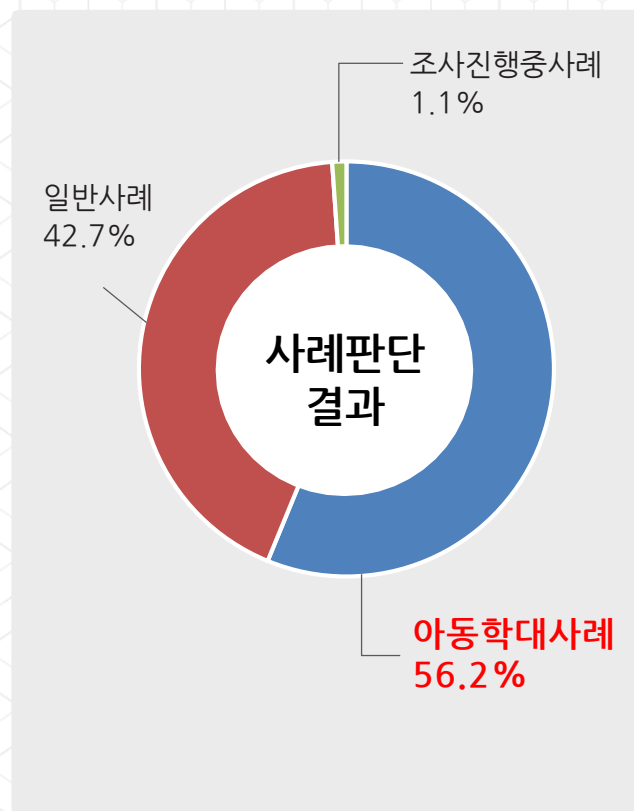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아동복지법	-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의 장과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영유아보육법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유아교육법	유치원 장과 종사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초·중등교육법	학교의 장과 종사자
건강가정기본법	- 가족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의료법	-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 의료기사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시설 -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9조에 따른 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 시설의 장과 종사자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119구급대원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보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입양특례법	입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현황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



아동학대 판단비율



주요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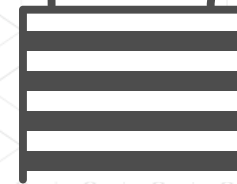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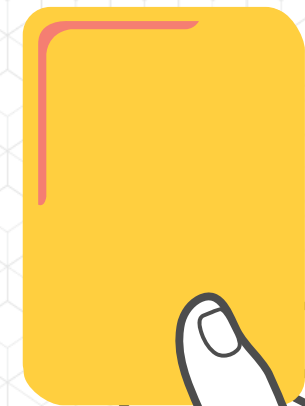
제26조제3항(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한다)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아동복지법(제75조 3항1의 2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아동학대처벌법(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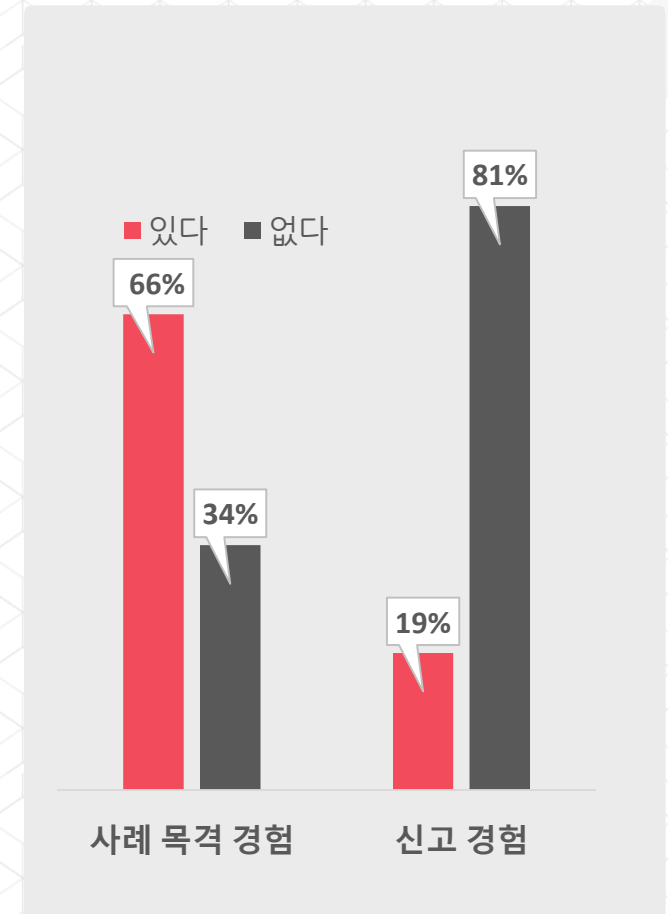
제26조제3항(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한다)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아동복지법(제75조 3항1의 2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아동학대처벌법(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

아동학대사례 목격 및 신고 경험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 (아동학대처벌법 제 10조의 2)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3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62조제2항, 제62조의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3조)

-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면 안됨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이익조치(파면/해임/해고 등)를 해서는 안됨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적 처벌 과정에 있어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신변안전조치, 열람제한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신고의무자 보호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비공개 의무

- ◆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하여서는 안됨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 ◆ 신고자에 대한 비밀엄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 제2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한 신고자 보호조치

- ◆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3

- 신고 관련 조서나 그 밖의 서류 작성 시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능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신고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영상물로 촬영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법원은 증인 신문 시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거나 비공개로 진행 가능
- 법원은 공판기일 지정이나 그 밖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 협의 가능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 조치 가능



신고의무자 보호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 ◆ 아동학대범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됨
- ◆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 가능
- ◆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제15조

5.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에 대한 편견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겠어?

아동학대행위자의 82%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합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누구나 사랑과 헌신으로 아동을 양육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아이가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을까? 학대가 아닌 건 아닐까?

아동학대가 만성화되면 무력감과 좌절감을 겪으며 행위자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이 가족에 의한 피해 사실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 일이야

아동학대는 고질적으로 반복,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히 대응되지 않으면 만성화될 우려가 있고 이는 ‘아동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꼭 신고해야 해?

아동학대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인지한 사람의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맞으면서 크는 거지, 사랑의 매 몰라?

체벌을 받은 아이는 반사회적 행동과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게 될 경향이 높습니다. 인지장애 등 부정적 형태 17개 중 13개와 연관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것은 없다” - 발달심리학자 엘리자베스 거쇼프 -

아이가 맞을 만한 행동을 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아동은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이 정도가 아동학대? 때린 것도 아닌데 아동학대일까?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도 성장과정의 아동, 가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Q & A



Q&A

Q1

아동이 입고 다니는 옷이 더럽고 청결하지 못합니다.
피부병도 있는 것 같은데 상태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학대로 볼 수 있나요?

아동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은**
방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여부는 아동학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상황만으로는 아동학대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충분히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피해아동이나 학대를 하는 사람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해자에 대한 명백한 진술이 없다면
가해자는 **미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Q&A

Q3

혹시나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될까봐
아동학대 신고를 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동학대처벌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받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신고자가 원할 경우 신고자의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Q4

신고했음을 학대행위자나 가족에게 고지해도 되나요?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신고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대행위자나 가족이 신고사실을 미리 알게 되면 아동이나 목격한 주변인들에게 진술을 만류하거나 거짓 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줄 수 있으며 신고자 신분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알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A

Q5

아동학대행위자는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아동학대행위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도나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는 처벌 대상 또는 처분(상담/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6

신고하면 경찰관도 출동하나요?

신고 즉시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지구대’의 ‘지구대경찰’이 출동합니다.

지구대 경찰관 우선 출동 이후 경찰서의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사복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재 피해아동이 있는 장소’와 ‘신고 된 의료기관’에 출동하여 피해아동의 현재 상태, 분리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Q&A

Q7

신고 후에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할까요?

신고 이후에는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속히 개입합니다.
상황에 따라, **아동에게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거나 어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출동하기까지 **아동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Q8

아동학대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가능한 많은 정보와 증거가 도움이 됩니다.
아동학대 또는 의심이 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속하게 아동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증거나 증언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A

Q9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언론인터뷰 요청이 오면
응해도 되나요?

**피해아동 개인정보 및 신고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 보도는 위법입니다.**

언론보도로 신고자와 피해자 2차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터뷰 실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마치며

아동학대의심 체크리스트 소개



- 아동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14개 항목을 확인하여 신고유무를 결정하는 체크리스트를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p.402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 다만, 아동학대 신고를 고민할 때 체크리스트는 도구로만 활용하되, 신고의무자 본인이 확인했을 때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언제든지 112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의심 체크리스트

연번	체크항목	체크란(✓)	
		예 □	아니오 □
1	사고로 보이기에겐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	아니오 □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	아니오 □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	아니오 □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취해를 당한다.	예 □	아니오 □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	아니오 □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예 □	아니오 □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	아니오 □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	아니오 □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	아니오 □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	아니오 □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	아니오 □
12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	아니오 □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예 □	아니오 □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	아니오 □
15	"아동학대의심 체크리스트" 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학대 의심 상황 :)	예 □	아니오 □
1개 문항 이상 "예"로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신고전화 112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